

의안번호	2204881
의 퇴 인	조정훈 의원
회 답 일	2024.11.15.
추 계 번호	24C4502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 (한국영유아교육· 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)	(제1항) 영유아 교육·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영유아 중심의 교육·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영유아교육·보육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	의무규정
		(제2항)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영유아의 교육·보육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조사·연구·분석 2. 유치원,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·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3. 유치원 교원 및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·운영에 관한 업무 4. 유치원 교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·심리 지원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업무 5. 영유아의 신체·정서·심리·건강·보건 등 안전에 관한 업무 6. 영유아의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7. 영유아 교육·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8.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9.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10.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,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11.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12.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13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	의무규정
		(제5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8조 (한국영유아교육·보육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현행 법 제8조에 따른 ‘한국보육진흥원’을 ‘한국영유아교육·보육진흥원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, 수행하는 업무를 추가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
 - 개정안은 '24년 6월 개정된 「정부조직법」의 시행으로 보건복지부의 보육 관련 사무와 조직이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,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‘한국보육진흥원’ 또한 그 명칭, 설립목적 및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며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, 현 한국보육진흥원은 기존 보육 업무 외에 ‘영유아의 교육 및 유치원’ 등에 관련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할 것으로 보임

[표] 개정안에 따른 업무 범위 변경

구분	현행	개정안
제1호	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정책분석	영유아의 교육·보육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조사·연구·분석
제2호	원활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	유치원,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·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
(신설, 3호)	—	유치원 교원 및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·운영에 관한 업무
(신설, 4호)	—	유치원 교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·심리 지원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업무
(신설, 5호)	—	영유아의 신체·정서·심리·건강·보건 등 안전에 관한 업무
제9호 (→6호)	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	영유아의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
제8호 (→7호)	영유아 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	영유아 교육·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
제3호 (→8호)	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	변경없음
제4호 (→9호)	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	
제5호 (→10호)	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,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	
제6호 (→11호)	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	
제7호 (→12호)	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	
제10호 (→13호)	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 장관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	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
자료: 교육부

□ 개정안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따라 ‘한국영유아교육·보육진흥원’이 신규로 담당하게 될 업무에 필요한 인력·예산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나, 현시점에서는 구체적 인력·예산 추계가 곤란함

-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‘한국영유아교육·보육진흥원’이 추가로 수행하게 될 ‘유치원 교원 및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

상을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·운영에 관한 업무(안 제3호)', '유치원 교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·심리 지원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업무(안 제4호)', '영유아의 신체·정서·심리·건강·보건 등 안전에 관한 업무(안 제5호)' 등¹⁾에 대한 필요 인력과 관련 사업 및 예산에 대한 추정이 필요함

- 한국보육진흥원은 2009년 12월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경영혁신본부, 유아종합지원본부 등 5본부, 1실(정책개발실), 2부(인사혁신부, 감사부)²⁾로 구성되어 있으며, 기관장 1인, 비상임 이사 9인 및 비상임 감사 1인과 일반정규직 141명 및 무기계약직 226명³⁾으로 구성
- 또한, 2024년 기준 정부 직접지원 22,079백만원(보조금)⁴⁾과 간접지원(수수료) 550백만원 등이 지원되고 있음⁵⁾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업무량 증가에 따라 필요 인력 및 사업비 예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 지원도 증가할 수 있음

○ 다만, 변경될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필요인력, 사업량 및 소요 예산 등을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곤란

- 2024.6. 발표된 '유보통합 실행계획'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관간 상이한 교사 직무연수체계를 대신하여 4대 분야(교육과정실행, 영유아지원, 영유아 정서발달지원, 특별한 영유아지원) 중심의 맞춤형 직무연수를 중심으로 한 '통합연수체계'를 마련할 예정이나, 2024년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필요 인력과 예산 등에 대한 추정이 곤란함
- 이외에 유치원 교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·심리 지원 역량 강화(안 제4호)⁶⁾ 및 영유아의 안전에 관한 업무(안 제7호)⁷⁾, 기존 교육부장관 및 국가, 지방자치단체 외에 '교육감'으로부터 위탁받을 업무(안 제13호)에 대한 구체적 내용 또한 현시점에

1) 이외에도 안 제1호 및 제2호, 제6호 및 제7호 등에 따라 관련 업무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임

2) 이외에 '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'로도 기능하고 있음

3) 일반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은 정원기준임(2024년 3분기 공시 기준) (자료: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, 알리오)

4) 보육진흥원 운영지원(21,729백만원), 시간제보육 사업운영·관리사업(350백만원) (자료: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, 알리오)이며, 보육진흥원 운영지원에는 정규직 및 무기직의 인건비와 관리운영비, 어린이집 평가 관리,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및 지원(보수교육),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(교육진행비 등),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됨

5) 한국보육진흥원 2024년도 수입·지출 결산서(자료: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, 알리오)

6)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'교육활동보호센터'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또는 이와 다른 연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지 여부 등 업무범위와 이에 따른 필요 인력 및 예산 규모에 대한 예측이 곤란함

7) 현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1조(건강관리 및 응급조치)부터 법 제33조의4(어린이집 위생관리)에 따른 건강·영양 및 안전 관련 업무가 포함될 수 있고, 어린이집 외에 유치원 원아 등을 포함하게 될 것으로 보이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 업무내용 및 범위, 필요인력 및 사업예산 등에 대한 추정이 곤란함

서 추정이 어려움

- 한편, 현행법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‘교육부장관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,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이 추가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추가될 지원 경비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추정이 어려움
- 이에 동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